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8,214,857	14,046,446
일반회계	443,862,068	13,315,862
특별회계	24,352,789	730,584
공기업특별회계	10,598,513	317,95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98,513	317,955
기타특별회계	13,754,276	412,6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0,640	17,11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93,041	38,7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19,719	57,59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06,828	9,20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64,048	289,92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16,14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